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10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10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년 10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도로과장 배치열)

□ 제안이유

-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까지 모두 시로 이양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05. 06. 23. 대통령령 제1886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는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원색 사진과 설계도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 등은 시장에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에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을 추가함.(안 제5조)
-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 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
-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연막이나 연기,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방법 및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말고 바탕색을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종류별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8조)
-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위치 또는 장소,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
-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실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및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 제거한 불법광고물은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9조)
- 광고물등 중 법 위반 입간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8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안 제35조 및 별표)
-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생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토지·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인이 광고물을 부착하는데 동의에 따른 횡포가 있다고 보는데 ○ 옥외광고물의 난립이 상당함.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 토지, 건물주에게 있다고 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토지, 건물주에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 과태료를 광고물 설치자에게 부과시 토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다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할 경우 광고물은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남게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 ○ 도미미관 정비 차원이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규격화, 고품격화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 불법 행위에 대한 근원을 찾아보면 건축허가시 일정부분을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한 방법임. ○ 조례를 개정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질서는 난무하고 실효성이 없을것임. 해당부서의 대책과 추진의지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되며, 현장방문을 통해 중재역할을 하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임. ○ 상위법 규정상 원인행위자를 설치자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것임. ○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며 조례와 별도로 불법 광고물의 난립 방지대책을 검토하겠음. ○ 내년도 국, 도비 약 12억을 투입 계남대로(GS백화점과 LG백화점 사이)를 시범가로로 조성할 계획임. ○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음. ○ 노력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45호
의결 년월일	2005. 10. 14 (제122회)

제안년월일 : 2005. 10. 14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표시방법을 제한하고자 할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천시의회 의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하고,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제4항 규정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으나,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률에서 위임한 기준을 벗어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상위 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천시의회 의원을 추가 위촉함.
(안 제20조 제1항)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제4항 규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수정하고자 함.
(안 제35조 제1항 별표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0조 제1항 제2호를 “부천시의회 의원 1인”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 안 제35조 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8만원 13만원 19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25만원 30만원 39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 +10만원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5만원 20만원 29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생략) 1. (생략) (신설) 2. (생략) 3. (생략) ② ~ (생략) ③ ~ (생략) 1. ~ 5. (생략)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u>부천시의회 의원 1인</u> 3. <u>(원안 2호와 같음)</u> 4. <u>(원안 3호와 같음)</u> ② ~ (원안과 같음) ③ ~ (원안과 같음) 1. ~ 5.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9만원 이상 26만원 미만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10만원	- 0.5제곱미터 이하		8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15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25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19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26만원	- 1.0~1.3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39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2.0~2.3제곱미터 이하		45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99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10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00만원 +10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80만원 +10만원

원			수		
안			정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2) 그밖의 지역 · 장소에 설치 한 경우			(2) 그밖의 지역 · 장소에 설치 한 경우		
(가) 연면적 1제 곱미터 미만	· 7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		(가) 연면적 1제 곱미터 미만	· 3만원 이상 10 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u>8만원</u>	- 0.5제곱미터 이하		<u>5만원</u>
- 0.6~0.8제 곱미터 이하		<u>13만원</u>	- 0.6~0.8제 곱미터 이하		<u>7만원</u>
- 0.9~1.0제 곱미터 미만		<u>19만원</u>	- 0.9~1.0제 곱미터 미만		<u>9만원</u>
(나) 연면적 1제 곱미터 이 상 2제곱미 터 미만	· 25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나) 연면적 1제 곱미터 이 상 2제곱미 터 미만	· 10만원 이상 30 만원 미만	
- 1.0~1.3제 곱미터 이하		<u>25만원</u>	- 1.0~1.3제 곱미터 이하		<u>15만원</u>
- 1.4~1.6제 곱미터 이하		<u>35만원</u>	- 1.4~1.6제 곱미터 이하		<u>20만원</u>
- 1.7~2.0제 곱미터 미만		<u>49만원</u>	- 1.7~2.0제 곱미터 미만		<u>29만원</u>
(다) 연면적 2제 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40만원 이상 80 만원 미만		(다) 연면적 2제 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 2.0~2.3제 곱미터 이하		<u>45만원</u>	- 2.0~2.3제 곱미터 이하		<u>35만원</u>
- 2.4~2.6제 곱미터 이하		<u>60만원</u>	- 2.4~2.6제 곱미터 이하		<u>40만원</u>
- 2.7~3.0제 곱미터 미만		<u>79만원</u>	- 2.7~3.0제 곱미터 미만		<u>49만원</u>
(라) 연면적 3제 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3제곱 미터 초과면적 의 0.5제곱미터 당 5만원을 가 산한 금액	<u>80만원</u> <u>+5만원</u>	(라) 연면적 3제 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3제곱 미터 초과면적 의 0.5제곱미터 당 5만원을 가 산한 금액	<u>50만원</u> <u>+5만원</u>

[수정안 포함]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

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다만, 영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이 경우 영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할 것.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할 것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

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
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아니할 것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
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 할 것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 이어야 하고, 세로 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것
3. 2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 가능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그리고 형광색상과 발광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될 것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를 것.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 크기는 세로 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 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
-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할 것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것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할 것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 표시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할 것.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최대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로 할 것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할 것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하여 배부할 것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 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부천시의회 의원 1인
3.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4.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 무담당이 된다.

③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이 경우 관계공무원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 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것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세로길이 5미터 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6.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2.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지정게시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관 또는 시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제33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일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

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법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법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32조제1항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 외 광 고 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금액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3,000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30,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2,000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15,000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4,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35,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15,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15,000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금 액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4,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대			10,000
나. 차량 양측면	대			2,000
11. 선전탑	개			4,000
12. 아취광고물	개			4,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4,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7,000 1,500
15. 벽 보	매		· 50매당	3,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3,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 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 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금 액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3,000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30,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 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8만원 13만원 19만원 25만원 30만원 39만원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 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 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 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 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 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 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 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관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6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 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 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 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 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 하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p>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p>60만원</p> <p>70만원</p> <p>70만원+ 1㎡당5만원</p> <p>40만원</p> <p>60만원</p> <p>80만원+ 1개당5만원</p>
<p>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p> <p>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p>나. 교통안내소</p> <p>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p> <p>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p> <p>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가로형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p>40만원</p> <p>50만원</p> <p>60만원</p> <p>70만원</p> <p>80만원+ 1㎡당5만원</p>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p>25만원</p> <p>30만원</p> <p>35만원</p> <p>36만원+ 1㎡당5만원</p>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p>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p> <p>가. 비행선</p> <p>(1) 무인 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p>(1) 유인 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p>나. 그밖의 교통수단</p> <p>(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p>(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p>(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p>	<p>·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p> <p>·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p> <p>·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p> <p>·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p> <p>·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p>	<p>150만원</p> <p>150만원+ 1㎡당10만원</p> <p>200만원</p> <p>200만원+ 1㎡당10만원</p> <p>10만원</p> <p>20만원</p> <p>29만원</p> <p>35만원</p> <p>45만원</p> <p>50만원</p> <p>+5만원</p>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① 번 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업신고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⑱ 변 경 사 항	⑲ 비 고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²)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 물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 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20 (년 월)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천 시 장 인</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호서식】

- 규 격 : 가로 6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p>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p>사 진 (3.5×4.5)</p></div> <p>부 천 시</p>

<후 면>

<p>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p> <p>자 격 기 한(20 ~ 20)</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천 시 장 인</p>

【별지 제8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 반 장소·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청구 및 인수증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p>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부천시장 귀하</p>				
광고물등 인수증				
인 수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p>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수인 (서명 또는 인)</p> <p>부천시장 귀하</p>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천 시 장 인</p>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연번	② 교육 과정명	③ 교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호	비 고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			
⑥위 탁 기 간		20 ~ 20 (년 월)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천 시 장 인</p>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현행 조례>

부천시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 2003. 01. 15 조례 제1913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 (이 경우 영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가로정비팀장이 된다.

③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4미터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지주이용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건물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이므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2. 기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절차등)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도조례”라 한다)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지정계시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시장은 현수막 지정계시대·지정계시판 또는 지정벽보판

(이하“게시시설”이라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 협회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상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 (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수수료는 별표 2, 법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법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2003.01.15 조례 제1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

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